

목 차

2019년 제2차 OECD 뇌물방지 작업반회의 등 결과 보고서

2019. 7

1.	2019년 제2차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참석 결과	3
2.	OECD EDRC 한국평가보고서 실사 사전질문 입수 결과	12
3.	한-칠레 FTA 제2차 개선협상 참석.....	16
붙임 1	회의 일정.....	17
붙임 2	회의 사진.....	20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6. 25.(화)~28.(금)/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관기관 :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참석자 : 36개 OECD 회원국 및 EU,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러시아, 남아공 등
 - 한국대표 : 법무부 국제형사과 박성진 검사, 인천지검 임하나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문소희 사무관, 주오이시디 대표부 최윤선 서기관 참석

□ 주요 결과

- 일본, 헝가리에 대한 4단계 이행평가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에 대한 추가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체코에 대한 4단계 평가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평가 등을 실시하였음.
 - 일본은 자국의 국제뇌물 관련 제재 수준이 뇌물방지협약(제5조)에 불일치(not consistent)한다는 사무국의 의견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수준의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할 것을 요청함.
-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에 대한 해외뇌물 수사 및 공조현황이 공유됨(Tour de Table).

- 그리스의 최근 형법(Criminal Code) 및 형사소송법(Criminal Prodecure Code) 개정안(2019.7.1. 시행)이 해외뇌물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형량 감소, 공소시효(5년)가 짧다는 지적에도 이에 대한 미변경, 국제뇌물죄의 불기소 가능성 등 상당히 우려스러운 조치라는 의견이 공유됨.
 - 우리측은 아일랜드와 함께 최근 그리스의 3단계 이행평가를 담당한 주심사국(lead examiner)으로서 그리스의 동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발언 제시
 - 그리스에 대한 일종의 경고 조치(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 그리스 총리 앞 서한 발송,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성명(Public Statement) 발표)을 의결함. 아울러 그리스에 대한 추가 이행점검을 개시하고, 심사단(우리나라 포함)이 그리스를 현장방문(가을 예정)하여 2019.12월 평가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함.

□ 세부 회의 결과

1. 뇌물방지협약 및 2009년 권고안의 국가별 이행 평가

- (일본) 사무국은 △ 일본의 해외뇌물사태 인지 건수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며*, △ 수사에 있어 당사자의 자발적인 수사 협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 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통한 수사 사례가 적다고 지적함. 또한 국제 뇌물에 대한 제재의 정도가 너무 낮다는 평가와, 공소시효의 연장 필요성도 지적됨.

* 협약 가입(1999년) 이래 일본은 46개 해외뇌물 사례를 인지(그 중 약 절반은 OECD를 통한 것임)하였고, 그 중 5개 사례(12명, 2개 법인)에서 유죄 판결 확정

- 일본은 국제뇌물예 대한 제재수준이 협약(제5조)에 불일치(not consistent)한다는 사무국의 초안에 대해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수준으로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한 우리측 대응 요지는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2729(2019.7.3.) 참조

○ (헝가리) 국제뇌물 사건에 대한 인지 및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 배치,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국제청에 의한 의심거래 보고제도 확충, 2년의 수사기간 규정의 연장 및 사기업의 효과적인 반부패 준법지원 사업 등이 권고됨.

○ (아르헨티나) 기업책임법(Corporate Liability Law)을 제정하여 협약 이행에 진일보하였고, 특히 해외공무원에 대한 개념 및 법인 책임 범위의 확대, 제3자 뇌물공여죄 추가 내용 등이 평가되었음.

- 다만, 아르헨티나의 기업책임 면제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된 바, 일정조건* 충족 시 기업 책임이 면제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음.

* 1) 기업이 내부 인지·수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고발할 것, 2) 기업은 범죄 고발 시점에 적절한 청렴 프로그램을 수행 중일 것, 3) 법인은 취득한 부적절한 이익을 반환할 것.

○ (체코) 기존 4단계 이행평가지 받은 17개 권고사항 중 4개 완전 이행, 10개 일부 이행, 3개 불이행으로 평가받음.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telligence Unit)를 통한 국제뇌물범죄 인지 노력, 대검에 의한 기업책임 관련 책자 출간 등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됨.

2. 해외뇌물 사건 공유(Tour de Table)

○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이 해외 뇌물사건 수사 및 공조현황을 공유함.

○ 캐나다의 해외뇌물사건 수사 후속보고가 진행된 바, 작업반은 캐나다 SNC-Lavalin 기업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캐나다의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함.

※ 캐나다의 SNC-Lavalin은 대표적인 기술·건축 회사로, 리비아의 수도관 공사 관련하여 카다피 등 리비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 등으로 현재 수사 중이며, 정치인 등이 연루되어 국회 차원의 조사 진행 중

※ 지난 뇌물방지작업반회의(3월)시 동 사건에 대해 수사의 독립성(OECD 뇌물방지협약 제5조) 훼손이 염려된다는 취지의 OECD 의장 명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의 논의를 진행

3. 그리스의 최근 형법 등 개정 사항 논의

○ 그리스는 부패 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형법(Criminal Code), 형사소송법(Criminal Prodecure Code) 개정안을 2019.7.1. 시행한 바, 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아일랜드와 함께 최근 그리스의 3단계 이행평가를 담당할 주심사국(leade examiner)으로서 동 그리스의 조치와 관련한 평가 등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그리스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뇌물방지법 위반 관련 처벌 형량 감소 : 예) 과거 중죄는 징역 5~10년, 경죄는 1~5년 처벌 → 중죄는 징역 3년 이상, 경죄는

3년 이하

- 공소시효(5년)가 짧다는 지적에도 개정시 미반영
- 기소 강제주의 관련 : 경범죄(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 조건 충족 시 불기소 가능 →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처벌을 무력화시킬 우려 제기
- 국제협력 :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형사사범공조요청 거절 가능 → 형사사범공조의 범위를 좁힐 우려
 - 우리측은 그리스의 동 개정법에 따르면 국제뇌물죄가 더 이상 중죄(felony)가 아니라 경범죄(misdemeanor)를 적용하게 되어 공소시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국제뇌물죄의 불기소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함. 아울러 국제형사사범공조, 범죄인 인도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리스의 동 법 개정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조치라는 의견이 공유되어, 그리스에 대한 다음 조치를 의결함.
 - 그리스 총선(2019.7.7.)에 따른 신정부가 구성되면 OECD 뇌물방지 작업반 의장(Drago Kos) 명의로 그리스 신임 총리 앞 서한 발송
 -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7.10.자 성명(Public Statement) 발표
 - ※ 상기 서한 및 성명안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2729(2019.7.3.) 참조
 - 그리스에 대한 추가 이행점검 절차를 개시하고, 주심사국인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를 포함한 심사단이 그리스를 방문,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가을 예정), 2019.12. 평가보고서를 채택키로 함.
 - ※ 위 평가는 최근 그리스에 대한 긴급 평가를 하기로 결의한 GRECO (반부패 유럽 평의회)와 함께 수행할 예정

4. 4단계 이행 평가에 대한 서면 및 추가 후속조치(Follow-up) 방안 논의

- 2019.3월부터 영국, 핀란드를 시작으로 4단계 이행평가 2년후에 시행하는 후속조치(follow-up) 서면확인절차가 개시되었음.
 - 사무국은 실제 위 후속조치 확인절차 시행 과정에서 당사국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해 개정안 제시(아래 프레젠테이션 자료 참조)
- 1) 4단계 이행평가 서면 후속조치 준비 시한(time line) 설정
 - 기존 : 점검단(사무국+2개 주 심사국)이 마련한 초안(요약본 및 결론)을 작업반 회의 전 회람
 - 개정안 : 서면 검토기간 부여 : 피점검국 1주, 점검단(피점검국의 코멘트에 대한 검토 기간) 2주
- 2) follow-up 이슈(이행점검 보고서 상 권고사항과는 별개) 모니터링 등
 - 기존 : 각 follow-up 이슈별 양식(template)에 맞춰 정보 제공 요청, 이슈별 개별 평가는 거의 진행하지 않음.
 - 개정안 : 모든 follow-up 이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료 요청(one request),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점검단이 별도 정보 요청 가능
- 3) 추가 후속조치에 따른 권고사항
 - 기존 : 핵심 권고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구두, 서면 보고가 요구될 수 있음.
 - 개정안 : 위 내용 유지



Phase 4 written and additional follow-ups: *Clarification and possible adjustments to current procedures*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26 June 2019



3 issues

1. Timeline for the preparation of Phase 4 two-year written follow-ups
2. Monitoring follow-up issues in written and additional follow-ups
3. Recommendations to be covered in additional follow-ups



1. Timeline for the preparation of Phase 4 two-year written follow-ups

- **Currently:**

Draft summary and conclusions prepared by evaluation team (Lead Examiners + Secretariat), then circulated to WGB ahead of WGB meeting.

- **Proposed adjustment:**

Insert a time period for review by the evaluated country (1 week) plus a time period for the evaluation team to consider the evaluated country's comments (2 weeks).



2. Monitoring follow-up issues in two-year written reports and additional follow-ups

Follow-up issues = where, in the absence of relevant case-law, practice or legislation, the WGB reserves its judgment on specific elements

- **Currently:**

- Two-year written follow-up template requests information on each follow-up issue. [*Phase 4 procedures, para. 53*]
- Follow-up issues are not (or very rarely) assessed individually in the summary and conclusions.

- **Proposed adjustment:**

- General rule: One request concerning all follow-up issues.
- Information on specific follow-ups may be requested by the evaluation team in the case of relevant developments.



3. Recommendations to be covered in additional follow-ups

• Currently:

- The evaluated country may be required to provide an additional oral or written report on “key” or “core” recommendations [Phase 4 procedures, paras. 51, 61 and Annex 5]
- Objective: Prioritisation of key issues + realistic workload for WGB, Lead Examiners and Secretariat

• Proposed:

- Maintain current WGB practice of identifying key recommendations for additional reports by the evaluated country.
- Maintain possibility for the evaluated country to ask for additional recommendations to be reconsidered, in the event of significant legislative, institutional or operational changes [Phase 4 procedures, para. 60].



In conclusion

If agreeable, proposed adjustments to Phase 4 procedures (paras. 52-56 and Annex 6) to be circulated to WGB for approval by written procedure.

5. 기타 사항(브라질 형법 개정에 대한 OECD 결의)

- 판·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브라질의 형법 개정안이 브라질 상원(Senate)을 통과(6.26.)한 바, 사무국은 관련 규정이 OECD 뇌물방지협약 제5조(수사와 기소가 경제적 이익이나 타국과의 관계 등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안됨)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함.
- ※ 동 브라질 개정 법률안은 직권남용에 대한 해석 범위를 너무 넓혀, 판·검사가 잘못된 증거 판단을 한 경우에도 직권 남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 작업반은 브라질 대통령에게 동 형법 개정안이 협약에 위반되고, 형사사법공조 및 국제공조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서한 발송 결의

6. 향후 계획(안)

- 차기 회의 일정(안) : 제3차 회의 10.8.(화)-11.(금), 제4차 회의 12.10.(화)-13.(금)
- 여타 주요 일정
 - 가을에 예정(날짜 미정)된 그리스 현장 이행점검(2019.12월 서면 보고 예정)
 - 우리나라에 대한 4단계 이행평가(12월 예정)에 따른 권고 사항 이행(구두 보고)

□ 권익위 소관 업무 관련 질의

- In 2018, the OECD adopted a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corruption convention in Korea. The OECD recommended i) strengthening sanctions on corporations, ii) investigating fraudulent accounting for foreign bribery purposes, and iii) strengthening the anti-bribery enforcement capacity of public agencies and private sector. What is the government doing to implement the key OECD recommendations?

2018년 OECD는 반부패협약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OECD는 가)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나)외국뇌물예 대한 허위 회계 조사, 다)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뇌물척결 법집행 역량 강화를 권고하였음. OECD 핵심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Korea's ranking i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as the seventh worst among the 36 OECD countries in 2018 (Figure B on the next page). What are the main causes of Korea's poor performance in the index despite the efforts made by the government to fight corruption?

한국은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OECD 36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음.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낮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 Please explain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reduce corruption and plans for the future. What are the main contents and achievements thus far of the Five Year (2018-2022) Anti-Corruption Comprehensive Plan?

정부가 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무엇인가?

- I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Korea performs poorly in the areas of corrup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political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the whole country are particularly low. W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improve Korea's performance in these areas and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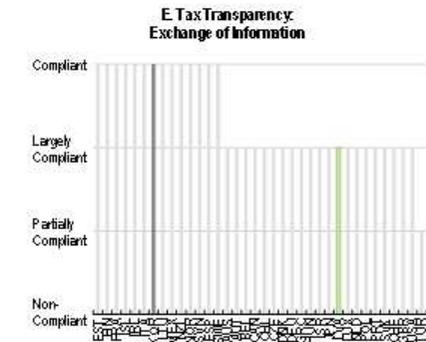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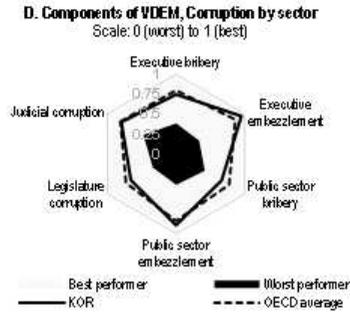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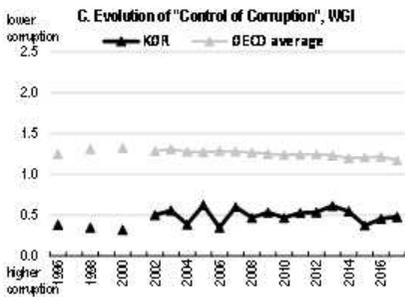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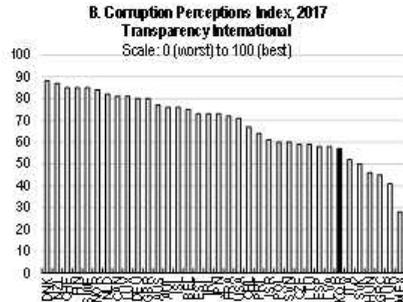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부패예방과 처벌 분야에서 점수가 낮으며, 정치부패와 국가 전체 부패가 특히 낮다. 이들 분야에서 한국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졌는가?

- What are the main elements and the anticipated effects of the law requiring the return of public funds received illegally, which was passed in April 2019?

2019년 4월 통과된 공공재정 환수법의 주된 항목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 Please discuss government policies and achievements to protect whistleblowers. Do whistleblow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fighting corruption in Korea and how could that role be strengthened?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성과에 대해 논하시오. 신고자는 한국에서 부패 척결에 중요한 역할은 하고 있는지와 그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3 한-칠레 FTA 제2차 개선협상 참석

□ 개요

- 일시/장소 : '19.7.4(목)-5(금), 칠레 외교부 (산티아고)
- 참석자
 - (우리측) 김기준 FTA교섭관(수석대표)외 산업부·기재부·농림부·고용부·환경부·문체부·권익위 등 10개 부처 대표단
 - (칠레측) Felipe Lopeandia 양자경제국장(수석대표)외 외교부·농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
- 주요내용 : 상품, 무역원활화, 지적권,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협력 등 8개 분과 협상

□ 수석대표 회의 및 작업반 운영 세부 일정

	7.4(목)			7.5(금)		
	10:00~11:00	11:00~13:00	14:30~18:00	10:00~13:00	14:30~17:00	17:00~18:30
Bilateral Room (11층)	성평등			지재권		
Conference Room (17층)	(예비)			상품		
DIFROL Room (7층)	전체 회의 (Conference Room)	(예비)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		전체회의 (Conference Room)
Press Room (2층)		환경		협력	(수석대표회의)	
Administrative Room (9층)		반부패		노동		

※ 한-칠레 FTA 2차 개선 협상 결과는 3급 비밀로 분류된바, 세부 내용은 대표단 결과전문(주칠레공화국(대)-S3210-S3220)으로 대체

붙임 1 회의 일정

6.25.(화)	
09:30~09:35	아젠다 확정
09:35~09:45	Summary Record
09:45~10:00	Management Group 회의 결과 보고
10:00~10:15	법집행 기관 비공식 회의 결과 보고
10:15~13:00	국가별 보고 (비공개 세션)
13:00~14:30	점심 휴식
14:30~15:30	해외뇌물 집행과 관련된 OECD WGB 데이터베이스 2009 권고안과 협약 이행을 위한 자가/상호 평가
15:30~18:00	일본 보고서에 대한 첫 번째 리딩

6.26.(수)	
09:30~09:45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국제스포츠 부패 파트너십(IPACS)의 결과 보고
09:45~10:30	참석자 보고
10:30~13:00	헝가리 보고서에 대한 첫 번째 리딩
13:00~14:30	점심 휴식
13:30~15:00	국제기구 보고
15:00~15:30	4단계 심사 추가 후속조치 - clarification and possible adjustments to current procedures
15:30~17:00	아르헨티나 보고서에 대한 첫 번째 리딩
17:00~18:00	아르헨티나 2주년 보고서 후속조치

6.27.(목)	
09:30~10:15	2009 뇌물방지 권고안 검토 - presentation of the stocktaking report
10:15~10:45	SNC Lavanin 기소 관련 캐나다의 후속조치
10:45~11:00	3단계 평가 후속조치 - 이스라엘의 구두 보고 -> 한국 구두보고시 참조
11:00~13:00	4단계 심사 : 일본 보고서의 요약집, 보도자료, 권고안 초안에 대한 두 번째 리딩
13:00~14:30	점심 휴식
14:30~16:30	4단계 심사 : 헝가리 보고서의 요약집, 보도자료, 권고안 초안 에 대한 두 번째 리딩
16:30~18:00	아르헨티나 보고서에 대한 두 번째 리딩

6.28.(금)	
09:30~09:45	OECD 경제부서와 반부패 이슈 관련 협조
09:45~10:00	2019 Council REcommendation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승인 보고
10:00~10:15	2019 공기업에 대한 반부패 청렴 가이드라인 승인 보고
10:15~10:30	3단계 평가: 스웨덴의 고위급 미션 보고
10:30~10:45	2019 글로벌 반부패 청렴 포럼 보고
10:45~11:15	3단계 평가: 남아공 추가 보고
11:15~11:30	4단계 심사 : 일본 보고서의 요약집, 보도자료, 권고안 초안에 대한 세 번째 리딩
11:30~12:30	4단계 심사 : 체코의 2주년 보고
12:30~12:45	2단계 평가: 러시아의 고위급 미션 보고
12:45~13:00	4단계 심사 : 헝가리 보고서의 요약집, 보도자료, 권고안 초안에 대한 세 번째 리딩
13:00~14:30	점심 휴식
14:30~15:00	3단계 평가 : 폴란드의 추가 서면 보고
15:00~15:30	국제관계활동: Initiatives in Africa, Asia-Pacific,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ACN), Latin America, and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5:30~18:00	기타 이슈 논의

붙임 2 회의 사진

